
2019년도 특허공제사업 경영현황

2020. 3.



기술보증기금

목 차

1	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	1
2	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	2
3	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	3
4	경영지표에 관한 사항	4
5	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.....	5
6	기 타 사 항	6

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

- ☐ 특허공제사업계정은 특허청 승인에 따라 결산시 국가회계기준 적용 (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-2231, '19. 10. 28.)

☐ 요약 재정상태표

(단위: 천원)

자 산		부 채	
현금및현금성자산	5,603,036	특허공제부금	2,672,300
유형자산	501,527	기타유동부채 등	113,883
무형자산	1,123,340	부채총계	2,786,183
보 증 금	149,000	자 본	
자산총계	7,376,903	이익잉여금	4,590,720
		자본총계	4,590,720
		부채와자본총계	7,376,903

☐ 요약 재정운영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I. 프로그램순원가	456,500	· 사업운영 직접추적가능비용
II. 관리운영비	1,984,480	· 사업운영 간접비용
III. 비배분비용	-	
IV. 비배분수익	31,701	· 자산운용 이자수익
V. 재정운영순원가 (I + II + III - IV)	2,409,279	
VI. 비교환수익	7,000,000	· 정부출연금
VII. 재정운영결과 (V - VI)	△4,590,721	· 당기순이익 46억원

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☐ 자금조달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19년
정부출연금	7,000
공제부금	2,672
수입이자	26
합 계	9,698

☐ 운용현황

(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잔 액	수익금액*	수 익 륜
운용자산	5,603	32	1.46%

* 기수입이자 26백만원 및 기말 미수수입이자 6백만원으로 구성

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

□ 조직 현황

- 기획팀: 부산 기술보증기금 본점 소재, 특허공제 기획업무 총괄
 - 공제상품기획, 자산운용, 리스크관리, 시스템 구축·운영 등 공제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 기능에 대한 역할 담당
- 운영센터: 서울 테헤란로 소재, 공제 운영업무 총괄
 - 가입자 관리, 홍보, 고객 유치 및 유관기관 협의 등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 기능에 대한 역할 담당

□ 인력 현황('19.12월말 현재)

구 분	2019년
특허공제기획팀	7명
특허공제운영센터	6명

4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

☐ 유동비율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19년
유동자산(현금및현금성자산)(A)	5,603
유동부채(기타유동부채)(B)	107
유동비율*(A/B x 100)	5,236%

*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지표로, 높을수록 지급능력이 양호함을 의미

☐ 자기자본비율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19년
자기자본(A)	4,591
총자산(B)	7,377
자기자본비율*(A/B x 100)	62.23%

*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지표로, 높을수록 자본건전성이 양호함을 의미

5

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

□ 경영방침

< 기본 방 향 >

특허공제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인프라 확충

① 가입자 모집
활성화

- 가입창구 다변화 및 홍보 활동을 통한 영업망 확장

② 고객 친화적
상품성 제고

- 고객의 가입수요를 견인하는 우대혜택 확대 추진

③ 공제대출 업무
개시 준비

- 하반기 공제대출 시작에 대한 차질 없는 대비

④ 지속 가능한
사업기반 마련

-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

□ 위험관리

○ 관리대상

- 공제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발생과 관련된 리스크
- 공제계약의 인수 및 공제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
- 공제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등

○ 리스크관리조직

명 칭	구성일자	위원구성		기 능
		내부(2명)	외부(5명)	
특허공제자산운용 관리위원회	2020-01-06	·공제담당 이사(1) ·자산운용실장(1)	·경영/금융 관련 전공교수(4) ·자산운용담당 5년 이상 실무자(1)	·공제자산 운용의 적정성 심의 ·자산운용 위험관리정책, 한도설정, 관리, 측정

6

기타 사항

☐ 특허청 조치사항

-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허청장으로부터 조치 받은 사항 없음.

☐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

- 「특허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」 제29조제1항에 의한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발생사실 없음.

☐ 작성근거

- 「특허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」 (특허청고시 제2019-16호, '19. 10. 16.) 제40조(경영공시)